

제3004호
2023. 6.1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람	기 관 의 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57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3-3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압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7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illegible]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57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자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의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영의 안전성 및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의 설치·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존속기간 및 자원 (안 제1조~제5조)
- 기금의 용도 및 운용(안 제6조~제7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 (안 제8조~제13조)
- 보칙 (안 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도심정비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정비과장, 전화: 02-3396-5783, 팩스: 02-3396-8783, email : sune020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업무 담당 국·과장, 예산부서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7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139호(2019. 1. 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21호(2020. 3. 4.) 및 제2020-128호(2020. 9. 23.)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중구 충무로4가 12-1호 / 3,600.6㎡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년 1월 16일
6. 변경내용 및 사유
 -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일부 변경 등
 - 사 유 : 유지관리 및 기능성 확보 등
7.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5)에 비치